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417
----------	-------

제출년월일 : 2020. 8.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개정이유

-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새롭게 제정된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지침을 반영하고, 안산화폐 다른의 조례명 변경 및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사항 반영

① 용어정비

- [안 제5조] 가맹점 지정 → 가맹점 등록
- [안 제7조] 가맹점 준수사항
※ 가맹점 등록 방법, 기준, 잔액 환급 요건 정비 등
- [안 제8조] 판매대행점과의 계약 → 협약

② 정보공개

- [안 제5조] 가맹점 등록 취소 사항
- [안 제8조] 판매대행점 정보

③ 그 외

- [안 제4조] 유통지역
- [안 제9조] 재발급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지침 반영

- ① [안 제11조] 안산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 카드 결제수수료, 가맹점 인센티브 지원 등, 각종 시책의 구체적인 근거 마련
- ② [안 제15조] 유통질서 확립 강화 및, 부정 유통 예방을 위해 사용자 교육, 가맹점 운영 상황 점검, 통합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함.

○ 조례 명칭 변경

①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② 조례에 사용하는 단어의 명칭을 아래와 같이 일괄 변경

“안산사랑상품권”, “상품권” → “안산화폐”

○ 활성화 시책

① [안 제11조]

· 종전의 “제11조(할인판매)”와 “제12조(상품권 활성화시책)”을 안 제11조
(안산화폐 활성화시책)로 통합

· 법인 구입 한도 신설 → “연간 2억원, 평상시는 3%, 특별기간 5%”

○ 그 외

① [안 제9조] 지류식 안산화폐 환불 규정을 “구매 당일에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환불”하는 조항을 신설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3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 붙임 4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0. 7. 21. ~ 7. 31.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 붙임5

○ 방침 결정문 : 붙임6

[붙임 1]

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장이 발행하는 “안산화폐”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상품권”을 “안산화폐”로, “금융기관을”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상품권을”을 “안산화폐를”로 한다.

1. “안산화폐”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제4호에 따른 가맹점에서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안산화폐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제5조에 따라 안산화폐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등록한 업소 및 신유형 안산화폐(전자형, 모바일, 온라인 등, 이하 “신유형 안산화폐”라 한다) 판매대행점과 가맹계약을 맺은 업소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을 “(안산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품권은 지류식

상품권, 신유형 상품권” 을 “안산화폐는 지류식과 신유형” 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유형 안산화폐

제3조제2항 “상품권” 을 “안산화폐”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유형 안산화폐는 기재사항 및 관련 정보 안내 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상품권일” 을 “안산화폐일” 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상품권” 을 각각 “안산화폐”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연장이” 를 “조정이” 로, “유효기간을 연장” 을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변경” 으로 한다.

1. “안산화폐” 라는 명칭

제4조제1항 중 “상품권은” 을 “안산화폐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품권” 을 “안산화폐”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품권의 이용” 을 “안산화폐의 이용” 으로, “상품권의 판매홍보” 를 “안산화폐의 판매홍보” 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안산화폐의 유통 지역은 안산시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가맹점 지정 및 취소)” 를 “(가맹점 등록 및 취소)”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을” 을 “등록을” 로, “지정한다” 를 “등록한다” 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 중 “지정한” 을 “등록한”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안산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로 위탁 발행되는 신유형 안산화폐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 정보가 포함

된 가맹점 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가맹점의 등록신청서 제출을 대신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시(출자·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사무 등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을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또는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을” 을 “등록을” 로, “지정 신청서를, 지정사항의” 를 “등록 신청서를, 등록” 으로, “지정사항 변경” 을 “등록 변경” 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등록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안산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홍주점
4. 그 밖에 시장이 안산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업소의 소재지 및 업종 등을 심사하여 안산화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⑧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6항에 따른 안산화폐 등록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⑨ 시장은 제8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을 “(안산화폐 사용대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품권은” 을 “안산화폐는” 으로, “지정된” 을 “등록된”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 중 “상품권을” 을 각각 “안산화폐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상품권을)” 을 “안산화폐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자가 안산화폐 권면금액 (안산화폐를” 로, “이를” 을 “가맹점은 이를” 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유형 안산화폐로 발행되어 잔액 환급을 위한 장치 구축 등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별 가맹점을 대신하여 안산화폐의 잔액을 환급할 수 있다.

제7조제5항 본문 중 “상품권” 을 “안산화폐”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7항) 중 “상품권을” 을 “안산화폐를” 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을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상품권의 보관·판매” 를 “안산화폐의 보관·판매” 로, “상품권의 분실” 을 “안산화폐의 분실”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을 “안산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을 “안산화폐 관리시스템에 안산화폐”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상품권” 을 “안산화폐” 로 한다.

-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상품권을” 을 “안산화폐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품권을” 을 “안산화폐를”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을 “안산화폐가 훼손되어 안산화폐” 로, “상

품권임을” 을 “안산화폐임을”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품권이” 를 “안산화폐가”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품권을” 을 “안산화폐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품권은” 을 “안산화폐는”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류식 안산화폐는 구매당일에 한하여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환불처리가 가능하며,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상품권을” 을 “안산화폐를” 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할인판매)” 를 “(안산화폐 활성화시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2항) 중 “상품권” 을 “안산화폐” 로 한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협의회 개최 등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산화폐 유통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산화폐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평상시 6퍼센트 범위에서 혜택을 주어 판매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혜택기간에는 10퍼센트 범위에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설 · 추석 명절

2. 어린이날, 시민의 날, 연말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 중 관내 군부대 소속 현역병

4. 그 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③ 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경우, 개인별 구입한도는 안산화폐의 종류에 따라 각각 월 60만원으로 한다.

④ 법인의 구입한도는 연간 2억원이며, 평상시는 3퍼센트 범위에서, 특별혜택기간에는 5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⑤ 시장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을 안산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산화폐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 · 용역 · 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안산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화폐의 유통 및 가맹점 모집과 홍보 등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에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안산화폐 유통 촉진과 홍보를 위하여 경품, 판촉물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모전, 안산화폐 소비의 날, 각종 기념식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⑧ 안산화폐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비용, 판매 · 환전수수료, 그 밖에 카드 결제수수료, 가맹점 인센티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신유형 상품권 업무의 대행)” 을 “(신유형 안산화폐 업무의 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대행사”를 “판매대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대행사는”을 “판매대행점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상품권” 을 “안산화폐”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상품권” 을 “안산화폐”로, “위한 조치를” 을 “위하여 사용자교육, 가맹점 운영상황 점검, 통합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8항에 따라 지원한 안산화폐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비용, 판매 · 환전수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안산화폐를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산화폐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대행점 협약(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		상생경제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상생경제과장 송 해 근
	담당·팀장 직위·성명	상권활성화팀장 박 근 호
	담당자 성명·전화	안 재 원 (행정 2921)

[별지 제1호서식]

안산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업종 및 취급품목	
	대 표 자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전화번호 (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소 소재지		
	환전 입금계좌 (대표자 명의)	계좌번호 :	
		은 행 명 :	예금주 :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산화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안산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신 청 인	대표자		생년월일 (남, 여)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 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	
	주 소			
신청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안산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귀하

구비서류	1. 가맹점 등록신청서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	---

[별지 제3호서식]

안산화폐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가맹점등록 번호:)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	
	주소			
사유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안산화폐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가맹점 등록신청서 원본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u>	<u>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안산시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 ·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장이 발행하는 “안산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안산사랑상품권”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제4호에 따른 가맹점에서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장이 발행하는 “안산화폐”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정의)</u> ----- .</p> <p>1. “안산화폐”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제4호에 따른 가맹점에서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안산화폐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용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p>

2. (생 략)

3. “판매대행점” 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가맹점” 이란 제5조에 따라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 및 신유형 상품권(전자형, 모바일, 온라인 등, 이하 “신유형 상품권”이라 한다)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업소를 말한다.

5. “운영대행사”란 제13조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신유형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은 지류식 상품권, 신유형 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형태는 시장이 결정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 상품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 (현행과 같음)

3. -----
----- 안산화폐 -----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
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
-----.

4. “가맹점” 이란 제5조에 따라 안산화폐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등록한 업소 및 신유형 안산화폐(전자형, 모바일, 온라인 등, 이하 “신유형 안산화폐”라 한다) 판매대행점과 가맹계약을 맺은 업소를 말한다.

〈삭 제〉

6. ----- 안산화폐를 -----

-----.

제3조(안산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안산화폐는 지류식과 신유형 -----

-----.

1. ~ 3. (현행과 같음)

4. 신유형 안산화폐

② 안산화폐-----

기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안산사랑상품권”이라는 명칭
- 2.·3. (생 략)
4. 발행일(지류식 상품권일 경우)

5. ~ 7. (생 략)
8.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9. 상품권 사용 문의 관련 전화번호 등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유효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발행 및 판매) 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유가증권 제조 전문업체 또는 신유형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련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 등에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신유형 안산화폐는 기재사항 및 관련 정보 안내 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1. “안산화폐”라는 명칭
- 2.·3. (현행과 같음)
4. ----- 안산화폐일 -----
5. ~ 7. (현행과 같음)
8. 안산화폐 -----
9. 안산화폐 -----

③ 안산화폐 -----
-----.
----- 조정이 -----
-----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변경 -----
-----.

제4조(발행 및 판매) ① 안산화폐는 -----.

<삭 제>

- ③ -----

----- 안산화폐 -----

④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
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상품권의 판
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대
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시장
은 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지정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상품권 사용이 적
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
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에는 해당되지 않

④ ----- 안산화폐의 이용-----

----- 안산화폐의
판매홍보-----

⑤ 안산화폐의 유통 지역은 안산시장
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가맹점 등록 및 취소) ① -----

----- 등록을 -----
----- 등록한다.

등록한-----
----- . 다만, 안산화폐 사용이 적
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
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
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로 위탁 발행되는 신유
형 안산화폐의 경우에는 「전자금융
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
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
업자가 가맹점 정보가 포함된 가맹점
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가맹
점의 등록신청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

으나 시(출자·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사무 등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지정사항의 변경을 희망하는 업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시장은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및 업종 등을 심사하여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한다.

④ 지류식 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은 지정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신 설>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또는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

② ----- 등록을 -----

----- 등록 신청서를, 등록 -----

----- 등록 변경 -----

또한, 등록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⑥ 시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안산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통주점

4. 그 밖에 시장이 안산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업소의 소재지 및 업종 등을 심사하여 안산화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⑧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6항에 따른 안산화폐 등록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⑨ 시장은 제8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자 등이

<신설>

제6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판매된 상품권은 제5조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법인 등이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지류식 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안산화폐 사용대상) ① -----

----- 안산화폐는 등록된 -----
-----.

<삭 제>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

----- 안산화폐를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안산화폐를 -----

-----.

④ ----- 안산화폐의 경우 「지역 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자가 안산화폐 권면 금액(안산화폐를 -----

----- 가맹점은 이를 -----
-----. 다만, 신유형 안산화폐로 발행되어 잔액 환급을

위한 장치 구축 등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별 가맹점을 대신하여 안산화폐의 잔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⑤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서 담배, 신간서적 등 법령으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상품권을 수취 또는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신 설>

<신 설>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⑤ ----- 안산화폐 -----

⑥ ----- 안산화폐를 -----

제8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 안산화폐의 보관·판매 -----

----- 안산화폐의 분실 -----

④ ----- 안산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및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이를 시가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신 설>

-----. ----- 안산화폐 관리시스템에 안산화폐 -----

⑤ -----
----- 안산화폐 -----

-----.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
안산화폐를 -----
---.

② -----
----- 안산화폐를 -----
-----.

1. 안산화폐가 훼손되어 안산화폐 -----

----- 안산화폐임을 -----

2. 안산화폐가 -----

③ ----- 안산화폐를 -----

-----.

④ ----- 안산화폐는 -----

-----.

⑤ 지류식 안산화폐는 구매 당일에

제10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1조(할인판매)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 7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에 대하여는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한하여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환불처리가 가능하며,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10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
-- 안산화폐를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안산화폐 활성화시책)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협의회 개최 등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산화폐 유통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산화폐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평상시 6퍼센트 범위에서 혜택을 주어 판매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혜택기간에는 10퍼센트 범위에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설·추석 명절
2. 어린이날, 시민의 날, 연말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 중 관내 군부대 소속 현역병
4. 그 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③ 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 및 인센티

〈신설〉

브 제공 등의 경우, 개인별 구입한도는 안산화폐의 종류에 따라 각각 월 60만원으로 한다.

〈신 설〉

④ 법인의 구입한도는 연간 2억원이며, 평상시는 3퍼센트 범위에서, 특별혜택기간에는 5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신 설〉

⑤ 시장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을 안산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산화폐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안산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⑥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화폐의 유통 및 가맹점 모집과

홍보 등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에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⑦ 시장은 안산화폐 유통 촉진과 홍보를 위하여 경품, 판촉물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모전, 안산화폐 소비의 날, 각종 기념식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신 설〉

⑧ 안산화폐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비용, 판매·환전수수료, 그 밖에 카드 결제수수료, 가맹점 인센티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 안산화폐 -----

-----.

〈삭 제〉

제12조(상품권 활성화시책) ① 시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설·추석 명절: 10% 범위에서 할인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10% 범위에서 할인

② 상품권 활성화 시책으로 할인된 상품권의 1인당 구매한도는 액면금

액 60만원으로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혜택,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인센티브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환전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신유형 상품권 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신유형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의 절차 및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해서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대행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신유형 안산화폐 업무의 대행)

<삭 제>

② ----- 판매대행점 ---

-----.

③ 판매대행점은 -----

---.

제14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 안산화폐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제15조(유통질서 확립) ① -- 안산화폐 -----
----- 위하여 사용자교육, 가맹점 운영상황 점검, 통합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할 -----.

②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8항에 따라 지원한 안산화폐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비용, 판매 · 환전수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안산화폐를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산화폐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업종 및 취급품목	
	대 표 자	생년월일 (성명) (남, 여)	
	전화번호 (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소 소재지		
	상품권 판권 임금 계좌 (대표자 명의)	개좌번호	환전 일정 계좌 (대표자 명의)
(대표자 명의) 은행명 : 예금주 :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시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해지 신청서 (가맹점지정 번호:)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 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주 소		
	사 유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안산사랑상품권 가맹점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가맹점 지정서 원본

[별지 제3호서식]

안산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업종 및 취급품목	
	대 표 자	생년월일 (성명) (남, 여)	
	전화번호 (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소 소재지		
	환전 일정 계좌 (대표자 명의)	개좌번호	온행명
예금주 :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안산화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안산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호)			
신 청 인	대 표 자	생년월일 (남, 여)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 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주 소		
	변경 사 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 유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안산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가맹점 등록신청서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별지 제3호서식]

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해지 신청서			
(가맹점지점 번호:)			
신 체 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연 소 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총 대문)	
사 유			
<p>『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안산사랑상품권 가맹점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p>			
20 년 월 일			
신청인		(사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가맹점 지정서 원본		

안산화폐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가맹점 등록 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
	주소			
사유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8-417호
----------	---------

제안년월일 : 2021. 3. 23.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안산사랑상품권(안산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별 할인구매 한도 상향 및 법인에 대한 할인판매를 적용하고자 하나,
- 이미 발행 및 유통이 활성화 된 상황과 가용한 예산 범위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지원시책의 필요성이 떨어지며, 아울러 부정 유통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할인판매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따른 개인별 구매한도를 안산화폐의 종류에 관계없이 월 60만원 이하로 함. (안 제11조제3항)
- 법인에 대한 할인판매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11조제4항)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
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3항 중 “구입한도는 안산화폐의 종류에 따라 각각 월 60만원으로 한다”를 “구매한도는 월 60만원 이하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제11조(할인판매)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 7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에 대하여는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11조(안산화폐 활성화시책)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협의회 개최 등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산화폐 유통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안산화폐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평상시 6퍼센트 범위에서 혜택을 주어 판매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혜택기간에는 10퍼센트 범위에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추석 명절 2. 어린이날, 시민의 날, 연말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자 중 관내 군부대 소속 현역병 	<p>제11조(안산화폐 활성화시책)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4. 그 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p> <p>③ 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경우, 개인별 구입한도는 안산화폐의 종류에 따라 각각 월 60만원으로 한다.</p>	<p>③ ----- ----- -----구매한도는 월 60만원 이하로 한다.</p>
〈신 설〉	<p>④ 법인의 구입한도는 연간 2억원이며, 평상시는 3퍼센트 범위에서, 특별혜택기간에는 5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p>	〈삭 제〉
〈신 설〉	<p>⑤ 시장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을 안산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산화폐로 지급할 수 없다.</p> <p>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p>	<p>④ (개정안과 같음)</p>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를 공제하거나,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p> <p>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안산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신 설〉	<p>⑥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화폐의 유통 및 가맹점 모집과 홍보 등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에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⑤ (개정안과 같음)
〈신 설〉	<p>⑦ 시장은 안산화폐 유통 촉진과 홍보를 위하여 경품, 판촉물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모전, 안산화폐 소비의 날, 각종 기념식 등을 개최 할 수 있다.</p>	⑥ (개정안과 같음)
〈신 설〉	<p>⑧ 안산화폐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비용, 판매·환전수</p>	⑦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정안	수정안
	<u>수료, 그 밖에 카드 결제수</u> <u>수료, 가맹점 인센티브 등</u> <u>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u> <u>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u> <u>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u> <u>수 있다.</u>	
<u>②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및</u> <u>환전수수료를 판매 및 환전</u> <u>금액의 1000분의 17 이하</u> <u>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u> <u>협약으로 정하여 지급 할 수</u> <u>있다.</u>	<u>⑨ ----- 안산화폐 -----</u> ----- ----- ----- ----- ----- ----- ---.	<u>⑧ (개정안과 같음)</u>